



2024학년도 시흥가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홍보

지혜롭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가온교육

(14996)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33

[담당교사 364-1815] 교무실 364-1700~1,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시흥가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학부모·지역위원 선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아래 학교 홈페이지 참조

❖ <http://www.gaon.es.kr>(클릭) ➔ 학부모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링크 ❖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학교홈페이지의 학교행사사진에서 정보주체가 삭제요구시 동의하에 삭제처리를 하겠습니다.

총 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SEARCH 제목 검색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파일
----	----	-----	-----	----	----

2024. 3. 4.

시 흥 가 온 초 등 학 교 장

❖ <http://www.gaon.es.kr> ➔ 공지사항 ❖

학교 VISION ⇨ **지혜롭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가온교육

2024학년도 **시흥가온초등학교** 제5기 (전교직원·학부모 홍보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본운영계획



시흥가온초등학교

SIHEUNG GAON ELEMENTARY SCHOOL

우(14996)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33
교무실 ☎ 031)364-1700~2 행정실 ☎ 031)364-1770~3

<http://www.gaon.es.kr>



CONTENTS

목차

- I.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선출 1
 - 법적근거·목적·설치범위 1
 - 운영위원 자격 및 임기 2
 -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4
 - 학부모위원 선출절차 및 내용 6
 - 교원위원 선출절차 및 내용 8
 - 지역위원 선출절차 및 내용 9
 - 정부위원장 선출절차 및 내용 10
- II.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11
 -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및 기능 11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2
 - 학생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14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유의사항 15

■ 한글파일 상태에서의 자료찾기 방법 ■

1. 특정 검색어로 찾아보기 : Ctrl+F 누르기 → 찾기 창이 열리면
찾을 내용란에 검색어 입력 → 찾기 클릭
2. 쪽수로 찾아보기 : Alt+G 누르기 → 쪽수 입력 → 가기 클릭

지혜롭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가온교육

시흥가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본운영계획

I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선출

1. 법적근거

교육기본법 제5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2. 목적

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및 학교 자치 실현

3. 설치범위

□ 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공·사립 각급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 세부 설치 범위

구분	세부 설치 범위
병설학교, 통합운영학교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병설유치원	◦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 병설유치원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4. 운영위원 자격 및 임기

가. 운영위원 자격요건 (시행령 제58조제2항)

구분	자격 요건
학부모 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 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 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질의·답변

Q.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A. 지역위원은 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사로서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불법)**

나. 운영위원의 겸임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질의·답변

Q.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지?

A. 학부모회 임원 선출절차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경우,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할 수 있음**

다. 운영위원 결격사유(법 제31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운영위원 **자격상실**(조례 제7조)

구분	자격상실 사유	공통 사유
교원위원	①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⑤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부모위원	②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③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역위원	③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 **해당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 상실**
- ▶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 ▶ **선거 공고시 반드시 자격 요건에 대하여 공지하고, 후보 등록 접수 시 확인**

마. 운영위원 임기(조례 제3조, 제4조, 제8조)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질의·답변

Q. 1학기를 마치고 전학으로 인하여 학부모위원 한 명이 결원될 예정이며 잔여임기는 7개월입니다.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보궐선거는 자리가 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는지요?

A. 잔여임기가 7개월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일자리는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함.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6.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가. 운영위원 정수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 생 수	위 원 수	비 고
200명 미만	5~8명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 2명 이상 별도 추가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	

- ▶ 운영위원 정수 산출 학생수 기준일 : **당해연도 3월 1일자 학생수**
단,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경기도 조례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에 따라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

나. 운영위원 구성 비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정수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구 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 위원	40% ~ 50%	30% ~ 40%
교 원 위 원	30% ~ 40%	20% ~ 30%
지 역 위 원	10% ~ 30%	30% ~ 50%

-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지역위원 중 1/2 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도 일반학교의 구성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40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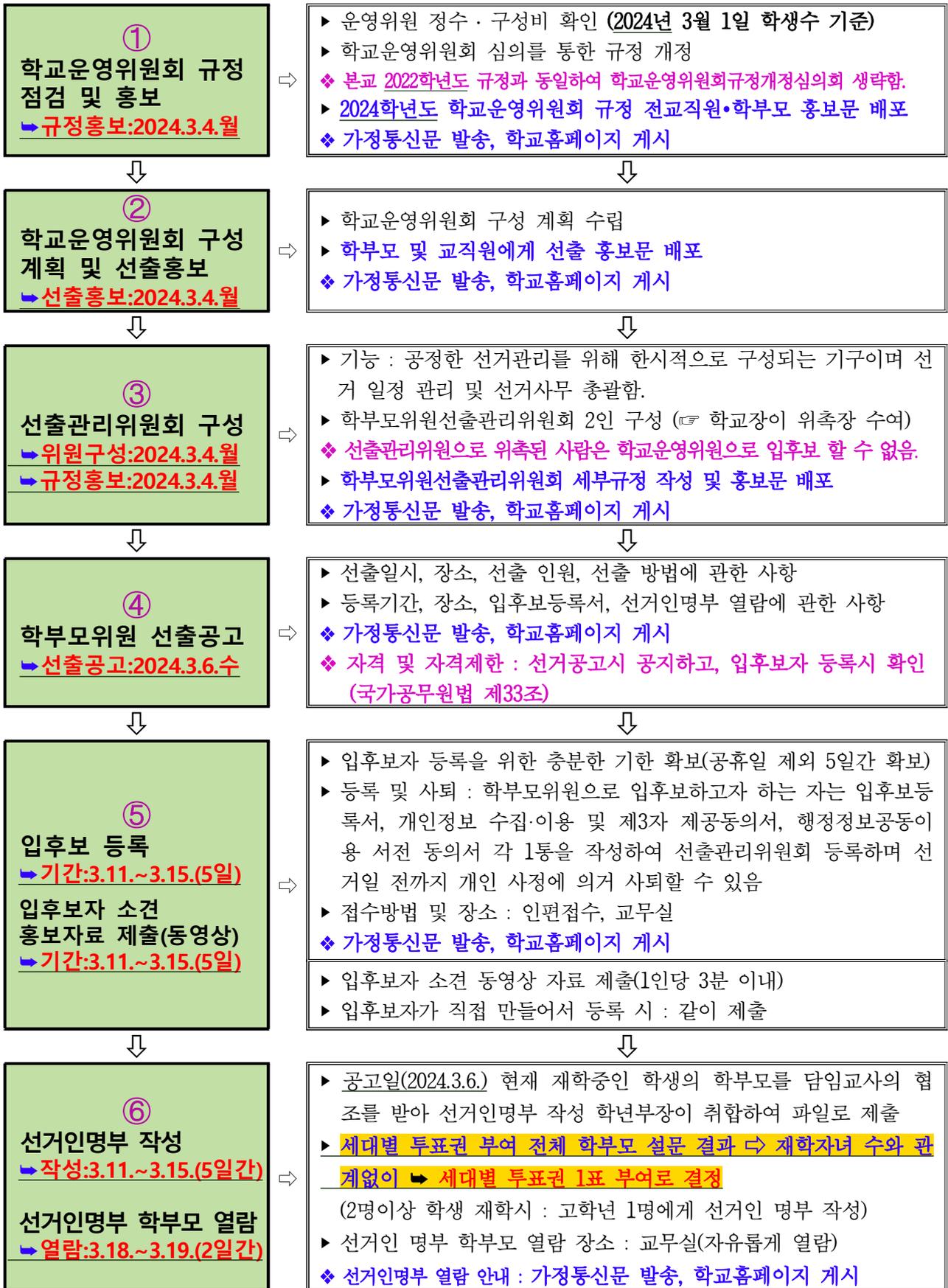
다. 2024학년도 시흥가온초등학교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학생수	위원정수	일반학교			비고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	
1,000명 이상 (2024.3.1.기준)	13명	6명	5명	2명	유치원위원 별도 2명 (교사, 학부모대표 각 1명)

- ▶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함.
- ▶ 운영위원 정수 7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에 맞지 않으므로 정할 수 없음.
(2명 : 28.5%, 3명 : 42.8%)
- ▶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정수 6명, 7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에 맞지 않으므로 정할 수 없음. (6명일 때 1명:16.6%, 2명:33.3% / 7명일 때 2명:28.5%, 3명:42.8%)
- ▶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도 정수별 운영위원 수를 일반학교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 병설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총 정수에 유치원 운영위원 2명 이상 별도 추가됨.
(예: 초등학교 학생 수 1,200명으로 초등학교 기준 운영위원 정수 13명, 유치원 운영위원 정수 2명
⇒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총 정수 15명)

7.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법정위원회) 구성 절차(중요사항)

가. 학부모위원 선출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



⑦
입후보자(전체) 결격
사유 조회
↳ **조회:2024.3.18.(월)**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담당 윤정순선생님)
▶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통한 ①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②결격사유 유무 조회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입후보자 - 입후보자 취소 통보**

⑧
선거 공보
↳ **발송:2024.3.18.(월)**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기호,성명,연령,성명,경력,입후보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 **공보 내용 :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게시**

⑨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2024.3.18.~3.19(2일간)**

▶ 후보자 기호, 이름, 기표 란 기재
▶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필요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⑩
직접 투표 실시
↳ **선출:2024.3.20.(수)**
↳ **시간:09:00~17:00**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투표용지수령→기표→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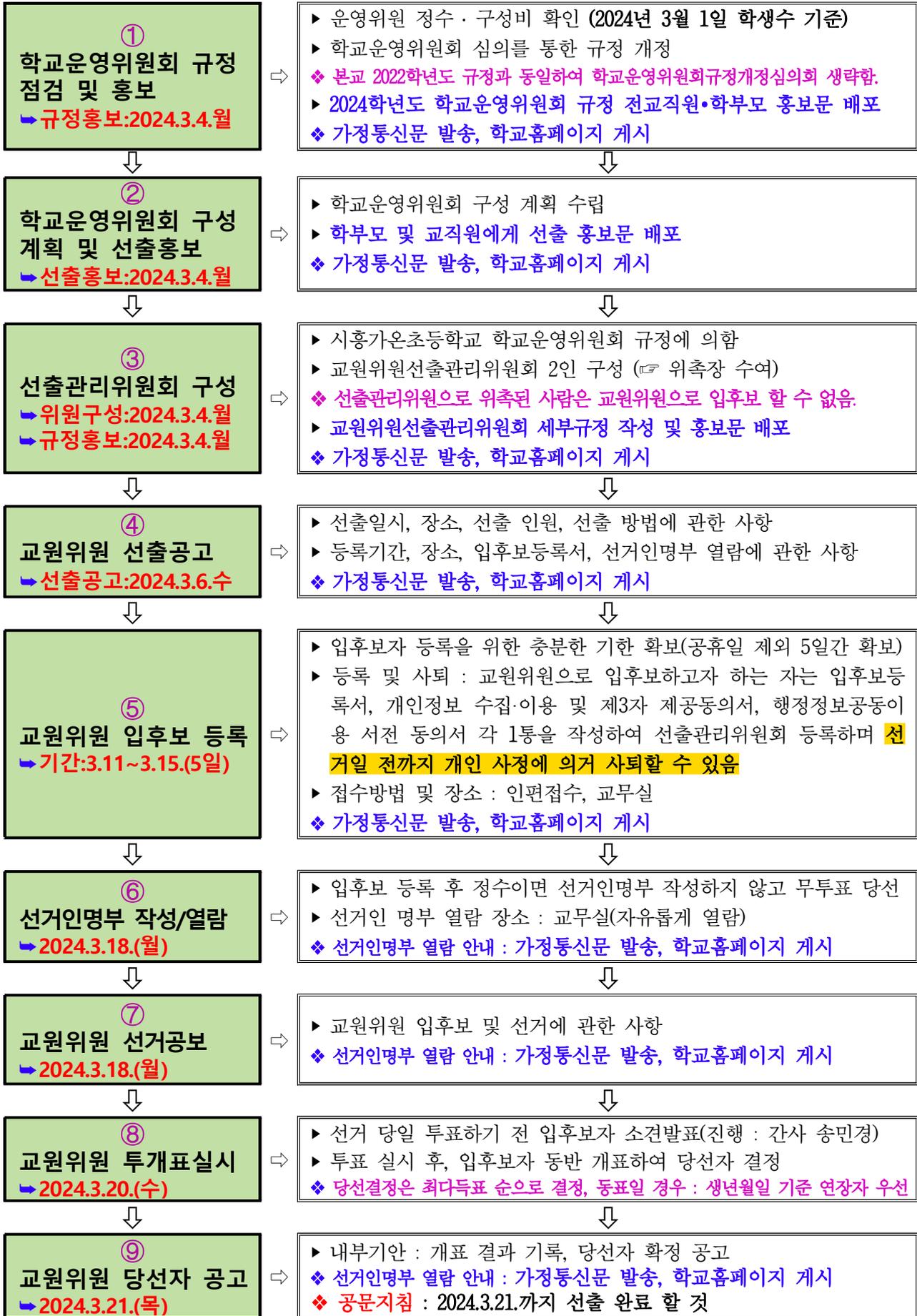
⑪
개표
↳ **선출:2024.3.20.(수)**

▶ 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개표
❖ **당선결정은 최다득표 순으로 결정, 동표일 경우 : 생년월일 기준 연장자 우선**
❖ **공문지침 : 2024.3.21.까지 선출 완료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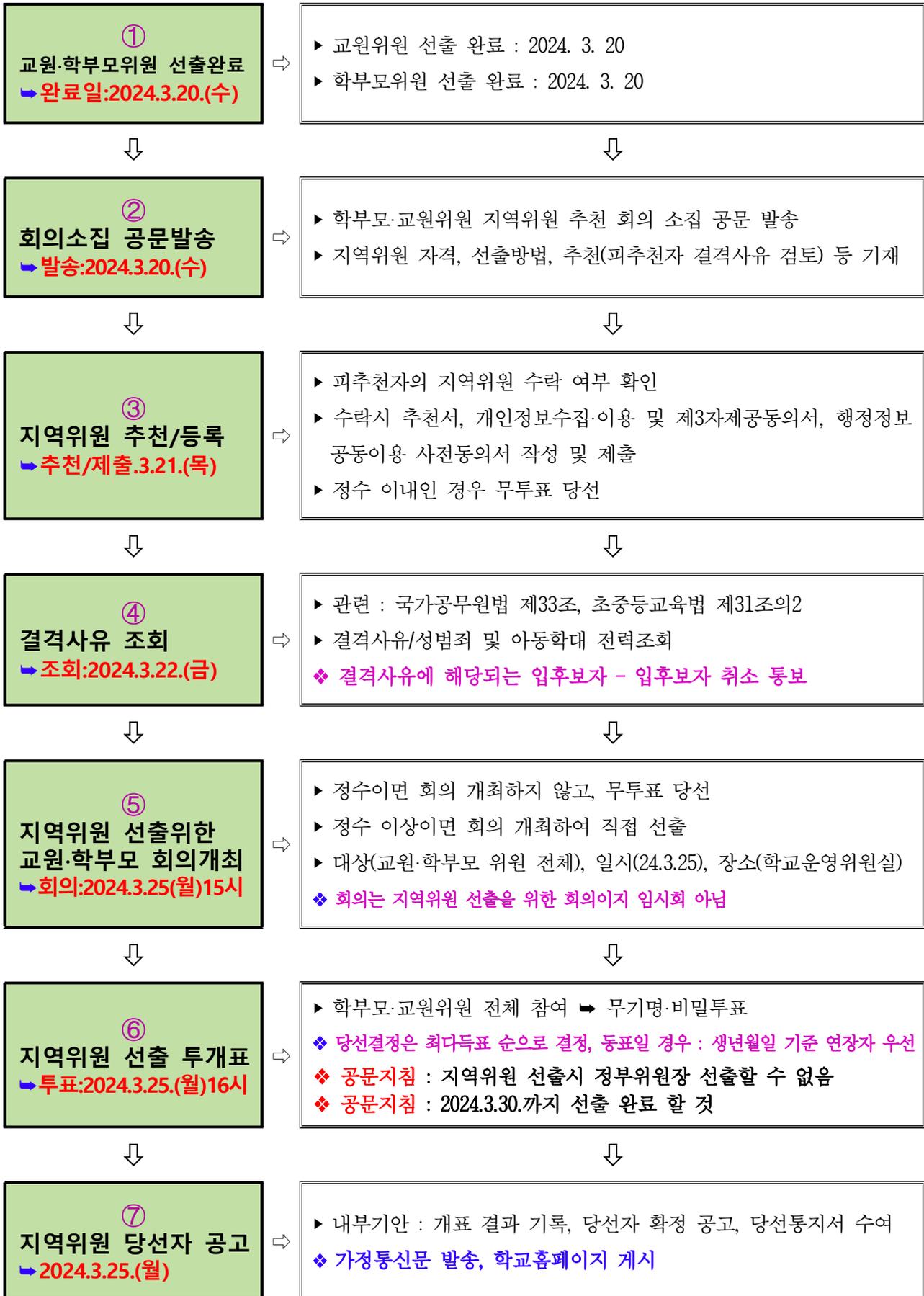
⑫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홍보)
↳ **공고:2024.3.21.(목)**

▶ 학부모선출관리위원장 : 당선자 ▶ 당선통지서 수여
▶ 학부모 모두에게 당선자 공고(정수 6명의 성명, 성별, 연령 등)
❖ **당선자 공고 :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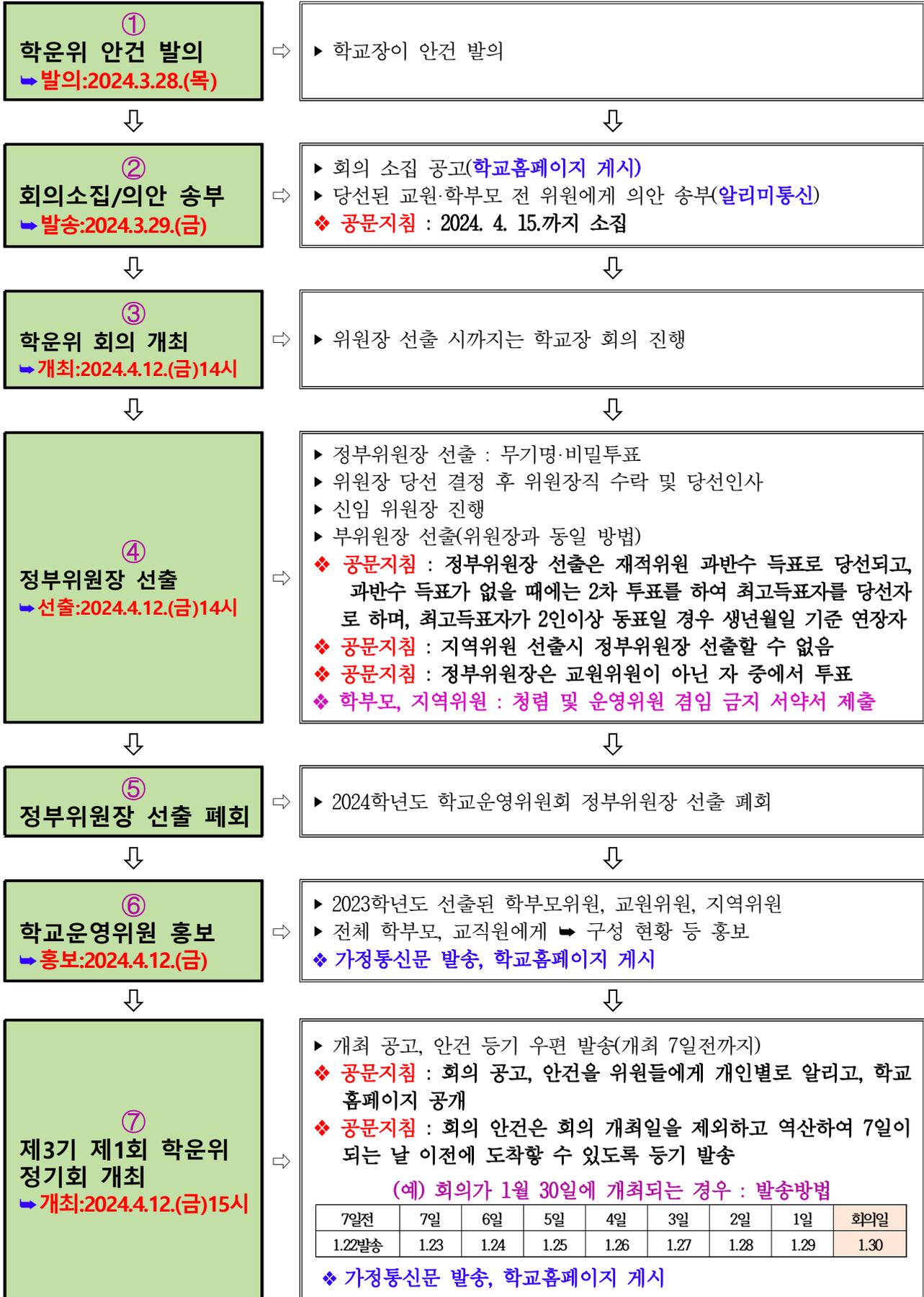
나. 교원위원 선출 (정수이상 입후보할 경우 → 전교직원 직접 투표)



다. 지역위원 선출 (정수이상 입후보할 경우 ➡ 학부모·교원위원 직접 투표)



라.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학교장 안건 발의)



II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1 학교운영위원회 성격·기능

- 성격 : 공·사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
- 기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구분	기능
제32조 제1항 심의 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2조 제3항 (심의·의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공·사립 공통)「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의2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공립)「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 사립학교는 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하고 제1호 사항은 자문함.

가. 회의 개요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 조례 제11조
- 회의 구분 : 정기회 / 임시회
 - 정기회 소집 시기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본교 규정 : 4월과 9월 연 2회)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 회의 일수 및 회기
 -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함

나. 안건의 제출·발의

- 관련 : 조례 제11조, 제12조
- 안건 발의
 -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
 - 학교회계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심의회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 가능

다. 회의 소집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 조례 제11조)
- 회의소집 주체 : 위원장
 -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 회의 소집 방법
 - 회의 소집공고(회의일시, 장소 등)와 함께 회의안건을 붙여 각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소집공고 및 안전송부 기한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 ※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의 기간

- 회의 개최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이 되는 날 이전에 도착*
 - * “도착”이란, 안건이 우편으로 주소지에 도착한 경우나 이메일로 도착한 경우 등 학교운영위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의미함
- (예시) 회의가 1월 30일에 개최되는 경우

7일 전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회의일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회의참석에 대한 학부모·지역위원의 편의 제고
 - 일과 후, 주말 등 학부모·지역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노력

라. 회의 소집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조례 제13조, 제14조
- 의사 정족수
 - 개의(開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議決)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단, 운영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사전 의견수렴 및 의견청취 : 학생·학부모 참여 활성화
- 회의 공개
 -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 원칙
 -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 회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방청 허가 결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므로,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필요성, 회의장의 질서 유지, 방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마. 회의 결과 공개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조례 제15조
- 회의록 작성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작성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
- 회의 결과의 공개
 - 회의 결과 :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 회의록 :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종료일 이후 7일 이내**,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회의록 비공개 사유(시행령 제59조의3)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조례 제16조
-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전문적·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예 방과후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
 -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필요시,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함
- ※ 소위원회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학교급식협력과, 재무기획관 등)의 지침에 따름

3 학부모·학생 참여 활성화

가. 학부모 사전 의견 수렴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조례 제15조의2
- 학부모 의견수렴 대상 안건
 - 해당 안건을 심의하려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구분	심의 안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5. 학교급식

-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 학교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회의 일시, 안건 등)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교홈페이지 게시일시, 심의내용을 학부모에게 안내
 -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 ※ 발의(상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해 학부모 사전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임

나. 학생 참여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조례 제15조의2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유형 및 대상 안건

구분	의견 청취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안건 제안 [시행령 제59조의4 제3항, 조례 제15조의2]
참여 방법	학생대표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학생대표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
대상 안건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그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 학생의 안건제안 방법 및 절차
 - 학생대표는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

- 운영위원회가 학생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 가능

※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학생 참여 활성화 노력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등 학교 운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활성화

□ 학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의 표결 과정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운영위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 중요 사안 심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 개별 방역여건에 따라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영상(비대면) 회의로 진행 가능

- 단, 아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영상(비대면) 회의 추진

비대면(영상) 회의 추진 시 검토사항

1. 영상(비대면) 회의 개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장)과 사전협의 하였는가?
2.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 가능한가?
3. 참여자가 누구인지(본인 참석 여부) 확인 가능한가?
4. 참여자 상호 간에 실시간 의사 교환(토론) 및 확인이 가능한가?

※ 학교운영위원회 서면심의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학교 운영정책 결정의 민주성 확보 및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감안 할 때, **서면심의는 불가함**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조례 제10조의2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①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심의 사항임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²⁾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교육지원청(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의결로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 신청 가능

2)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함

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시정명령 신청권 등
- 의무 : 회의참여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³⁾ 대상

- 운영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 중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 운영위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필요

□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

- 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제척, 除斥),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청(회피, 回避)

위원의 안건 심의·의결 제척 사유(시행령 제59조의5)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지위남용 행위 예방 및 대처 강화

-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한 거래 등⁴⁾을 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 될 수 있음을 안내 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8항)
- 운영위원이 지위남용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⁵⁾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부패 발생을 방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 제11조

4)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8항)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위남용 여부 판단 및 위원 자격상실 여부 결정